

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8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5. 11. 21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으로 2006. 1. 1.부터 도입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의 전치주의로 주민감사청구제가 채택되고,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
- 나.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감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수를 관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주민 “200명 이상 이어야”를 “200명으로” 조정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4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5. 10. 10. ~ 10. 30(20일간, 별도 의견 없음)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200명이상 이어야”를 “200명으로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부산광역시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,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사하구 관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주 민 <u>200명 이상</u>이어야 한다.</p>	<p>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----- ----- ----- -- <u>200명으로</u> -----.</p>